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개정이유

-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1.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도록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에게 공개
2.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매각 허용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공장
 -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투자지역을 조성한 재산
 -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업종별 또는 개별공장용지를 조성한 재산
3. 영구시설물 설치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2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4.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 보완(안 제22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 납부기간 및 이자율을 형평성있게 4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경제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촉진과 매각대금 납부연체 및 해약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

5.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조정 및 신설(안 제23조)

- 군수가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재산의 대부요율(1,000분의 50) 규정 삭제(현행 조례 제23조제7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요율적용조항 신설(안 제23조제8항, 제9항)
 -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6. 공장건설 목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 (안 제23조의3)

감 면 범 위	전 액 감 면	75% 감 면	50% 감 면
①조세감면 대상으로 고도기술 수반사업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	-
②외국인 투자사업으로 제조업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③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고용인원 300명 이상	고용인원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고용인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④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사업	국내 조달율이 100%인 때	국내 조달율이 75% 이상	국내 조달율이 50% 이상
⑤수출지향형의 투자사업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때	전체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때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을 수출하는 때
⑥기존 투자법인으로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사업	①~⑤ 해당하는 경우	②~⑤ 해당하는 경우	②~⑤ 해당하는 경우
⑦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	"

7.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조정 및 신설(안 제25조)

- 경계가 불분명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를 적용하였으나
-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기준규정 신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8. 대부료의 납기와 연체문제를 해소하도록 개정(안 제26조, 제28조)

- 대부료 납기조정(안 제26조제3항)
 - 경작목적 대부재산 대부료 납기를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개정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부료 납부기간을 유예하는 규정 신설(안 제26조제4항)
-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 규정 신설(안 제28조)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연체이자를 일정 기간 감면
 - 군수가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한 매각재산을 매매계약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연체이자를 감면

9. 수의계약 매각범위면적 등 규정 신설(안 제39조제1항, 제2항, 제3항)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규정 신설
 -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하며
-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서 위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10.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 감면규정 신설(안 제39조의3)

전 액 감 면	50% 감 면	25% 감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 · 투자금액이 30억달러 이상 대형공장 및 부대시설지역 · 1일 평균 고용인원 1천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 대상이고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벤처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경우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율이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원·부자재 조달율이 50% 이상

-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개정안 제19조의3과 같음

11. 관사정비계획에 따라 관사의 구분을 조정하고 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개정
(안 제51조, 제57조)

현 행	개 정 안
1. 1급관사 : 군수 관사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실·과장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관사 : 1급 내지 2급이외의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12.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수정 및 기타 자구정리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 부동산 시가표준액(안 제6조제1항제1호)
-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안 제23조제2항)
- 인근의 매매실례조사, 사정정통단체·조합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안 제24조제4항)

-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 →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
(안 제37조제4항)
- 실·과장 등 → 시설관리사 등(안 제50조)

□ 검토 의견

-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